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인쇄인 金 在 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568-6651~2
568-5595~6
FAX.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라3459
등록일:1988년2월19일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韓國漁港協會 95年度 정기총회 盛了

어항管理 專擔기구 設置 1·3종 漁港 확대指定 촉구

健全풍토 造成다짐도 孫井植 회장 "漁港 세계화 先導할 터"

한국어항협회는 3월 22일 상오 11시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세계화에 부응하고 건전풍토 조성을 다짐하는 한편 △지속적인 어항 개발을 위한 어항건설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1·3종 어항의 지속적인 확대 지정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담 관리 기구의 신설 △어항어촌을 일체로 한 종합개발계획의 과감한 추진 △현대적 어항기능시설의 대폭적인 보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1백여명의 내외 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 △어항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어항 홍보의 적극 전개 및 어항문화 창달 △어항관련 정부의 위임 위탁사업 확대 추진 △해운항만청 파랑관측망 관리 업무 대행 △어항 관계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 보호 등을 확정하고 올해 수지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박광훈 수산청장은 치사를 통해 앞으로 4백7개 지정어항 가운데 현재 건설 추진중인 제1·3종 어항 35개항과 제2종어항 2백여개항을 2004년까지는 모두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광훈 청장은 또 어항개발에 대한 확대 투자와 어항의 조기완공도 중요하지만 항개발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어항업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정식 회장은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응과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또한 활발한 국제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협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정식 회장은 특히 21세기의 문턱에서 미래지향의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명실상부한 어항기술 단체로서 어항의 세계화와 협회의 세계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어항어촌 건설을 위해 어항을 쾌적하고 활력있는 만남의 장으로 가꾸어 어촌지역 정주권 조성과 어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특별행사로 안숙선씨(주요 무형문화재 23호, 인간문화재 후보)를 초청, 가야금 병창을 공연했다.

決議文 (전문)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수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는 우리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 매립·간척으로 인한 어장의 축소, 어족자원의 감소,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선원난 등으로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해외 어업자원 보유국들의 입어규제 강화로 인한 원양어장 축소와 지난 89년 GATT 18조 B항의 졸업 및 93년 UR협상 타결로 오는 97년까지는 수산물 수입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화의 원년이자 WTO체제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와같이 수산업을 둘러싼 여러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한 국민의 영양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건강과 식량자급력의 향상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어항을 단순히 어선보호나 생산·유통의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에 부응하는 충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항어촌을 일체로한 종합적인 정비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어항인 모두는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건전 풍토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첫째, 어항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첨단 어항기술 개발에 노력하며 셋째, 건설업에 잔존한 부조리 풍토를 쇄신하며 넷째, 견실한 시공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아울러 다가올 21세기를 내다보며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을 위하여 어항관계시책의 새로운 전개와 제사업의 강력한 촉진을 바라며 이에 전국 어항인의 총의로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실현되도록 엄숙히 촉구한다.

- 지속적인 어항개발을 위한 어항 건설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담관리기구의 신설
- 1·3종 어항의 지속적인 확대 지정
- 어항어촌을 일체로한 종합개발계획의 과감한 추진
- 현대적 어항 기능시설의 대폭적인 보강

1995年 3月 22日
전국어항인 일동

港개발 質的向上 도모할 때 競爭力 강화 堅實 施工으로

朴光勳 청장 致辭 (전문)

지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국어항협회 정기총회에 치사를 드리게 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한지 첫돌을 맞이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 어항개발과 어항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셨고 특수법인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기반을 공고히 다져 오신 손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행정업무 쇄신과 정부조직개편 등 줄기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화를 한단계 앞당겨 놓았으며 밖으로는 새로운 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UN해양법의 발효와 아·태 경제협력체(APEC)등 지역기구의 활동 강화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구체화됨으로써 지구촌은 새로운 해양·무역질서를 향해 바쁘게 움직여 왔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과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로 지향하기 위하여는 옛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결단과 새로운 의식, 관행, 제도를 재구축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세계화를 앞당겨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과 기업, 정부의 역할이 각기 따로 있겠습니다만, 어항인 여러분께서는 어업활동과 어촌발전의 기반이 되는 어항건설의 기술개발과 견실시공으로 어촌정주환경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어항건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배가 되는 1천5백억원을 투자하여 어항시설의 조기완공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2面에 계속)

漁港중심 漁村 복지시설 擴充 協會 적극지원 業界발전 誘導

하겠습니다.

〈1面에서 계속〉 앞으로 4백7개 지정어항 가운데 현재 건설 추진중인 1·3종어항 35개항과 2종어항 2백여개항을 농특세 예산 7천8백억원과 일반회계 1천6백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는 모두 완공할 목표로 어항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어항개발에 대한 확대투자와 항의 조기완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항 개발의 질적향상이 앞서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건설업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항공사는 태풍, 폭풍, 해일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부실시공 추방을 위하여 규모가 큰 어항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감리 용역업체에 위임하여 책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특수공법을 요하는 어항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전문기술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업이나 수산분야 뿐만아니라 건설시장개방도 예외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건설업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어항건설 기술 수준의 향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며 협회를 중심으로한 여러분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항시설은 단순한 어선의 안전 수용 뿐아니라 수산물의 보급, 유통, 가공 등 기능을 겸비한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며 민자를 유치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깨끗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어항이 되도록 어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국어항협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에서도 협회가 어항업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항인 여러분께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변화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상적인 어항건설과 새로운 어항문화 창달을 위하여 장인정신을 가지시고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끝으로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바 입니다.

先進技術 협력 增進
市場개방 能動 대응

孫井植 회장
인사문(全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박광훈 수산청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역사적인 전환을 한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을 선언한 1년만에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대내외에 드높아졌습니다. 창립이래 볼 수 없었던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수산청장님을 비롯한 당국의 전폭적인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간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실체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바 있습니다. 재산공개로 시작된 정치개혁에서부터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각종 사회개혁은 이제 우리가 구태의연한 생각과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졸속·부실공사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항인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와 각오로 어항건설에 임해야 할지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회원국가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우리 앞에 경쟁과 공영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방 일정에 따라 이제 우리는 세계 유수한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실감하면서 살아 나가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漁港淸掃船 관리 運營 등
政府위임·위탁사업 확대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경쟁과 공영의 시대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수산업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 해양오염, 어족자원 감소, 해외어장 입어 규제강화, 그리고 수산물 수입 완전 개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는 우리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까지 그 구조나 규모면에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어항업계의 현실로서는 긴장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꼭 넘어야 할 벽이요,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회 기능이 효율적이고 활동이 생산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도 세계화에 따른 체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는 이를 위한 3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협회 운영의 자립도 완성 둘째, 협회 기능의 확대 셋째, 세계화의 창구 역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漁港투자 늘리는데 앞장
弘報등 강화 文化暢達에 기여
疏外階層 돕기에도 나서

우선 협회 운영의 자립도 완성과 기능의 확대는 정부사업의 확대 수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단체를 막론하고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곧 번영을 위한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협회가 번영과 생산성 향상이란 공동 목표아래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발상을 대전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상호 협조합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밖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응과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국제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협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특히 21세기의 문턱에서 미래 지향의 협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어항기술단체로서 어항의 세계화와 협회의 세계화를 기필코 이룩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어항어촌 건설을 위해 어항을 쾌적하고 활력있는 만남의 장으로 가꾸어 어촌지역 정주권 조성과 어민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협회 임직원은 소명의식을 갖고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기본목표 아래 올해 협회가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으로 먼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항분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어항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어항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어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어항청소선 관리운영을 비롯한 어항관련 정부의 위임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해운항만청 파랑관측망 관리 운영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어항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액 확보와 어항인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항관계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해 해난어선원 자녀와 소외된 제3세계의 불우이웃을 돕는 한편 의식개혁과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등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세계중심국가의 어항인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사고틀을 혁신하고 각종 제도를 개혁해서 관리능력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협회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몸과 마음을 한데 모아 우리앞에 처한 현실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뭉치고 뜻을 합하여 줄기차게 매진하면 결코 두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장과 발전만이 있을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오늘 이자리에서 확실히 가슴속에 새기도록 합시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광훈 수산청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動靜

▲박광훈 수산청장은 3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기념행사에 참석, 2일에는 부산 제[illegible] 청 어업지도선 무궁화 6、7、8호 취항식에 참석, 3일에는 수산청 개청29주년 기념식을 갖고 수산업발전 유공자 12명을 표창、 7일에는 산하 기관장회의를 주재、 8일에는 강원지역을 순시하고 수산관계관 및 어민들과 간담회를 개최、 11일부터 19일까지는 로마에서 열린 FAO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출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2일 부산 제5부두에서 개최된 수산청 어업지도선 무궁화 6、7、8호 취항식에 참석、 7일에는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현안업무 협조를 당부、 9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20일에는 조달청장을 방문하고 어항공사 계약관련 현안사항을 협의、 23일에는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당면 어항현안을 협의、 24일에는 한국수산회 정기총회에 참석.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3월3일 이달의 새어민상을 시상、 6일에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임직원부인 초청 경영설명회를 주재、 23일에는 이규택 국회의원 후원회 모임에 참석.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3월 16、 17 양일간 서산지부와 보령지부를 순시、 봄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와 올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관내 FRP조선소를 방문 업무협조를 당부.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 2일 기독교금고 이사회에 참석、 13일에는 전국 장로회의에 참석、 23일에는 기독교 총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 1일 현충탑을 참배하고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9일에는 광주종합유선방송 개국축하행사에 참석、 1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 상임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전남지회 총회에 참석、 17일부터 26일까지는 중국을 산업시찰.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사장은 3월 21일 엔지니어링클럽에서 열린 항만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 6일 민자당충남지구당 위원장 조찬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주주총회를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 9일 광주과학기술원 개원식에 참석、 13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조직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참석、 15일에는 전남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부실방지 및 재해방지에 관한 간담회를 주재.

〈3面에 계속〉

「漁港協」 해운항만청서 波浪관측망 관리 受託

事業本部를 新設 現場점검등 業務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월 14일 해운항만청의 파랑관측망 관리 운영사업을 위탁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어항협회가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파랑관측망 관리 운영사업은 항만·어항개발계획 및 설계와 재해에 대한 사전 연구분석을 위해 전국 각 해안 8개지역(강릉(경포)、포항(장기갑)、울릉도(사동)、부산(태종대)、여수(소리도)、제주도(마라도)、목포(홍도)、군산(어청도))에 설치된 표준파랑관측소의 파고계 유지점검 및 수시점검과 정확한 파랑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다.

어항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파랑관측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운영요원 확보와 경기도 안산시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게 될 파랑관측시스템은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하면 태풍내습시에도 아무런 이상없이 파랑이 관측되며 모든 자료를 실제 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상예보자료 및 선박안전운행、관제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항만청、수산청、기상청、건교부、내무부、해군、항만용역사、일반인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이관 측기에는 해수의 수온과 염도 측정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어 수산자원 관련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契約제도 改善등건의 不實사전 防止策으로

入札制度등 54個項 시정 通報

감사원 技術위주競爭 轉換위해

감사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의 성실시공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입찰제도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모두 54개 사항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행 건설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이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위주로 돼있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덤핑이나 답합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한 뒤 공사수행계획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공사를 공동도급할 때 군제한에 관계없이 입찰하게 돼있어 대형건설업체들이 소규모공사까지 수주하게 되는 등 군제한제도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군입찰대상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했다。

地域制限공사범위 大幅 上向

예회령과 別途 地自體別 범위 정해

또 일정규모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지역제한 공사의 범위가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 중소건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지역제한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예산회계법령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에 비춰 예산회계법에서 규정(일반공사 20억원、전문공사 3억원)한 것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관련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 경우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제한 공사 대상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지역제한 공사범위의 대폭 상향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3일 「수의계약시 도급상한금액 결정기준」 등 3건의 계약제도 개선을 조달청에 강력히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공장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85%미만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백억원(갑은 법 시행령 제99조 단서、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94·7·20)」 제3조 제2항이 정부의 부실시공 방지 시책으로 1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록 개정되었으나、현행 조달청의 계약기준은 특정공사(도로、하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85%미만인 경우에도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제한하고、또 일부 공사(예:기타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 80%까지 상향하여 수의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항협회는 조달청의 이와같은 낙찰률의 적용이 자칫 공사여건의 변수가 많은 공사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공사비 미보장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수의계약시 도급상한금액 결정기준」을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공사에 한해서는 법개정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최소한 낙찰률 85%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시 설계금액(공사예정금액)과 도급계약금액의 차가 5~7%내외로 과다감액 처리되고 있는 계약관행의 개선도 건의했다。

이는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의 계약관행이 오히려 공사비의 과다감액에 따른 적정공사비의 미보장으로 부실시공의 역효과를 초래、막대한 국가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面에서 계속)

취임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3월 12、13양일간 여수 삼천포현장에 출장。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 15일 대한건설협회 전남지회 간담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 11일 전남대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 18일 충북협회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

협회인사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방용주씨가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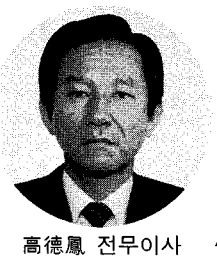

高德鳳 전무이사

화촉

▲한국어항협회는 3월 10일 고덕봉씨(전 수산청 어정국장)을 전무이사로 발령했다。

회비납부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부사장 정도영)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단(사장 주재욱)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사장 김영삽)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동기)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 사장)의 장남 형근군은 3월15일 오후 2시 상록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윤재희씨(본회 고문)의 차남 덕호군은 3월18일 오후3시 늘봄공원에서 화촉을 밝혔다。

▲송근호씨(남진건설주식회사 이사)는 3월15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85번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인석)

▲삼천포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홍)

▲송중석씨(주식회사금광기업 이사)

▲박선석씨(전 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신영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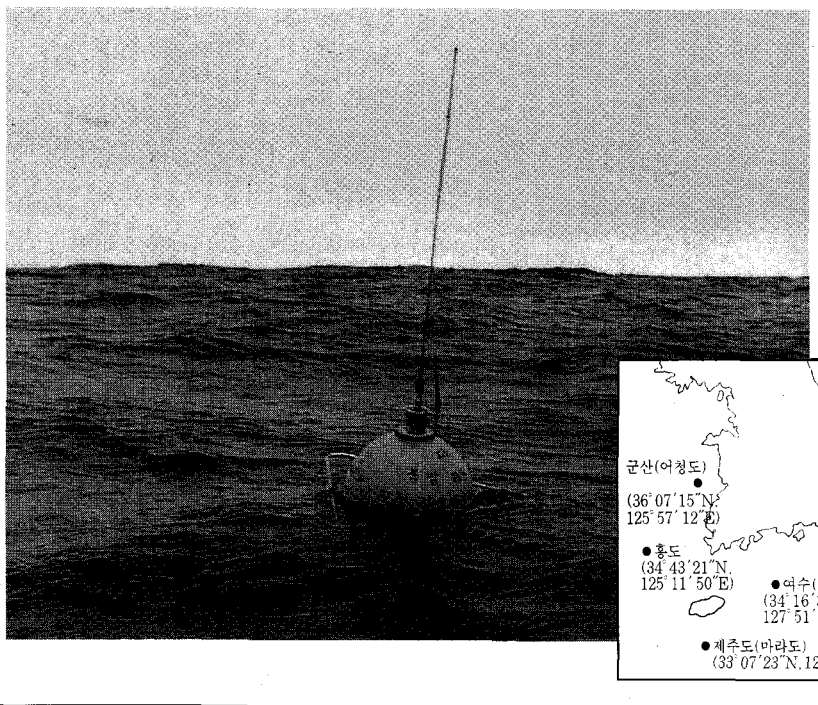

한국어항협회는 한반도 주변해역 파랑관측망을 관리운영합니다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66〕

水産倉庫用地

개설

어항내에 건설되는 수산창고는 제품창고, 활어창고로 대별된다.

(1) 제품창고

건다시마, 건미역, 김, 염건품, 건해산물등의 수산가공품을 일시보관하는 곳이 제품 창고이다.

(2) 활어창고

최근 교통의 발달,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생산 수송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활어를 취급하는 어항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활어는 양륙한 후 출하할 때까지 일시 수조에 축양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활어창고이다.

수산창고 용지는 부수되는 사무소, 제품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모여드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위한 용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산창고의 규모와 용지의 소요 면적

(1) 제품창고의 규모

제품창고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다음의 산정 차례에 따른다.

① 창고에 대한 수용량을 결정한다.

창고에 대한 수용량을 M이라 하면

$$M=(m_1+m_2)\times\alpha$$

다만,

m_1 : 당해 어항의 가공용 원어량 (톤/년)

m_2 : 당해 어항이외에서의 가공용 원어량(톤/년)

α : 제품수율(표1 참조)

② 단위면적당 보관수량을 결정한다.

수산제품의 단위면적당 보관수량은 제품의 종류나 하물모양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값을 결정할 때에는 인근 어항에 있는 수산제품 창고의 실태를 잘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조사에 의한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단 기준으로서 〈표2〉의 값을 사용해도 된다.

종 류	제 품 명	수율(%)
포 류	가다랭이포	15~20
素乾品	대구포	12~15
	건다시마	20~25
鹽乾品	鹽乾멸치, 고등어	28~35
	鹽乾전갱이	50~70
煮乾品	煮乾멸치	24~30
燻製品	燻製연어, 청어	40~50
鹽藏品	鹽藏멸치	60~80
	新巻연어	70~80
調味加工品	마른김	8~10
통 조 림	멸치통조림	45~50
	고등어 통조림	56~60

(주) 수율은 제품중량의 원어중량에 대한 비율

〈표1〉 제품별 수율

오징어	0.33톤/㎡
건조해조	0.24톤/㎡
참치통조림	0.10톤/㎡

〈표2〉 단위 면적당 보관 수량

③ 창고의 회전수를 결정한다.

창고의 회전수도 지역성이나 보관하는 제품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준으로서는 2~3정도를 사용해도 된다.

④ 수산창고의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수산창고의 소요면적을 A라하면,

$$A=\frac{M}{a}\times\frac{1}{N}\times\frac{1}{r}\times\frac{1}{k}$$

A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M : 창고에 보관되는 제품의 수량

a : 단위 면적당 보관수량

N : 회전율

r : 면적유효율(0.75정도)

k : 층수

(2) 활어 창고의 규모

활어 창고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다음의 산정 차례에 따른다.

① 성수기에 축양하는 활어의 수량을 결정한다.

② 수조의 규모를 산정한다.

수조의 용량을 V라 하면

$$V=\frac{A}{P}$$

다만, A : 성수기의 활어 축양수량

P : 해수 1㎥당 활어 축양가능수량

수조내의 해수 1㎥당 축양가능수량은 어종, 수질, 축양기간등에 따라 다르나 방어의 경우 7kg/㎥, 대하의 경우 10~14kg/㎥라는 표준치가 얻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당 축양가능량은 수조의 용량보다도 오히려 수조에 새로 가해지는 물의 유입량에 더 크게 좌우된다.

노인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하·게·삽·시·다

걷기 맨손체조등 가볍게 꾸준히

운동은 식사뒤 2~3시간 후에

인간의 몸은 활동적으로 성장할 때에는 그 기능이 향상되지만 활동을 하지않고, 노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노화의 특성을 알고 이에대해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의 특성을 보면, 먼저 생리학적인 기능이 가장 먼저 빠르게 감퇴한다. 그예로 40대부터 시력감퇴가 시작되고 40~50대가 되면 소화기능이 약화되며 그 외에도 청력장애·치아손상·폐기능의 약화, 근육반응시간의 지연등이 오게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에 동반되어 심리적인 변화가 온다.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서 시간적 여유는 많아진다. 이때 적절한 운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노인들의 운동 방법은 먼저 1단계로 자신의 신체능력을 평가하고 2단계로 운동계획을 세워야하며 3단계로 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온몸을 늘려주는 운동이 좋고 크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한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복잡하고 불규칙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또 갑한 충격이 올 수 있는 운동은 피하고 시작할 때나 끝마무리할 때 가볍게 운동하며 반드시 식사후 2~3시간 경과 후에 실시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신경의 반응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된다. 또한 체내지방을 제거하며 심장의 적절한 박동 및 혈압의 안정이 오며 혈액과 체액의 변화를 일으킨다. 폐기능을 강화하며 요통을 예방하고,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생활에 활기가 생기고 노화과정이 지연되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걷기, 펴기, 맨손체조, 달리기가 노인의 운동으로는 좋은 방법이다. 걸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바르게 걸으며 주당 4회, 하루 1시간 정도가 좋다. 펴기는 온몸의 근육을 일정시간 동안 서서히 지속적으로 펴는 것으로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서 다양한 동작을 실시한다. 맨손체조는 바른자세가 중요하며 심장에서 먼부위부터, 약한 운동에서 강한 운동으로 실시한다. 달리는 시간은 20~30분정도가 적절하다. 이와같은 종류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주당 4회 정도 실시하며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게 운동량 및 시간, 강도를 서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 생활법률

보증에 관한 법률 상식

채무자의 자산이 악화된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능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 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하다.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 계속적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생활법률